

##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3조 2항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두산건설(주)와의 소규모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.

- 다음 -

1. 반대의사표시 기준일: 2019년 12월 27일(금)

2019년 12월 12일

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 
두산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형 희  
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지 성 규